

교내대관시설물관리운영규정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교내 대관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교내 대관 시설이라 함은 대강당, 인문사회관 인사랑당, 학생누리관 소극장·이벤트홀, 5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 바롬인성교육관 국제회의실(세미나실, 소회의실, 강의실, 단위실 포함)등으로 한다.

제2조 (대관범위) 대관시설물과 부대시설에 한한다.

제3조 (사용허가) 대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공연 관련 법령상의 의무 위반 또는 사용료 납부 등의 미비 사항이 있을 때
4. 기타 사무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사용자가 제6조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6조 (사용시간) 사용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본 대학교 교직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 야간·토요일·일요일·법정 공휴일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지원되는 인력에 대하여 제5조의 사용료 외에 학교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대관 시설의 목적상 교내 업무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비영리적인 학술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내 업무에 대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허가취소)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사무처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한 준수 위반이나 지시에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기타 사무처장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사용료의 환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8조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본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3. 기타 사무처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중단 신고) 대관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상복구) 교내 대관시설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을 원상 복구하고 사무처 시설관재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권리양도금지)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 위 사실의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행사 취소와 함께 사용료 전액을 본교에 배상 조치한다.
③ 다만,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무처장의 사전허가와 반입시의 검사를 필한 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본 대학교에서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는 본교에서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대관시설 및 그 시설의 설비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사용자는 원상 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행위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교는 대관시설 사용자에게 관리자의 입장에서 입실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소란 행위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대관물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자 또는 대관시설 사용상 지장이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 행위를 하는 자
5. 기타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 (기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04 제4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 개정<'09 제26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제2항 개정<2010 제32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②항, 제11조 개정<2015 제25차 교무위원회>)